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16
------	------

제출일자 : 2021. 8. 24.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

「지방세법」 제7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부서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7. 23. ~ 2021. 8. 12) 결과: 별도 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별첨
- 4)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를 “자동차세로”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u>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u>)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p>	<p>제4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 ----- ----- ----- ----- ----- ----- ----- <u>자동차세로</u> ----- ----- ----- ----- -----.</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개정 조항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이므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세무2과 세입정리팀 장은영
연 락 처	2627 - 1274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 2017. 7. 17.]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932호, 2017. 7. 17. 제정]

금천구 (세무2과) 2627-127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931호, 2017. 07. 1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6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부터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로 한다.

- ③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각각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 ④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 ⑤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70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④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1. 4. 27] [대통령령 제31647호, 2021. 4. 27, 일부개정]

제10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9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과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과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9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6.>

④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통지·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6. 26.>

지방세법

[시행 2021. 7. 8] [법률 제18294호, 2021. 7. 8, 일부개정]

제7장 주민세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칙 <제18294호, 2021. 7.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법의 유효기간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시세징수 조례

[시행 2019.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6992호, 2019. 1. 3., 전부개정]

서울특별시(세제과), 02-2133-3354

제20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